

# 국제 안전보건동향

Global Trends on Safety and Health at Work

[2017. 12. 13]

Vol.  
441

<목 차>

1. 고용형태 및 근로환경 변화에 따른 안전보건감독 기능 재고 1
2. 영국, 업무상 스트레스 경험 노동자 급증 4
3. 영국, 건설현장 차량 관리를 통한 재해예방 가이드라인 6
4. 국제노동기구 이사회, ISO 45001 제정을 위한 협력 중지 결정 8

[별첨] 국외 단신

10



영국 안전보건청, 깃이코노미 노동자, 자영업 증가 등 고용형태와 근로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규제와 감독기관의 기능 재고 필요성 제기<sup>1)</sup>

## □ 주요내용

- ‘깃 이코노미’ 등 환경변화로 신종 직업이 창출되고 있는 반면, 위험관리 책임주체 등 새로운 이슈 발생

- 사업주-노동자 관계의 경제활동이 축소되고 있으나 자영업 종사자는 큰 폭으로 증가(5백만명, 전체의 15%)



- ‘깃 이코노미’에 참여하는 영국 내 경제활동인구는 130만명으로 추정
- Uber, Deliveroo, Airbnb 등 플랫폼 회사 출연으로 위험관리 등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있는 실정임
- 작업형태 변화와 늘어나는 유통단계, 외주관리 등으로 스트레스와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
  - 영국 안전보건청(HSE) 의장<sup>2)</sup>인 Martin Temple은 “사업주의 개념이 모호해지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안전보건 가치를 전달하는 것이 새로운 과제”라면서 “이러한 현상을 인지하고 실질적인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밝힘
  - David Snowball(HSE 규제국장)은 지난 10월 영국안전위원회(BSC) 정기총회에서 “깃 이코노미 현상으로 사업주-노동자 관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HSE도 규제 목표를 정비하고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 또한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고용환경 전체를 바라보는 시야가 필요하고 안전보건과 어떻게 연결을 시킬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임을 강조

1) 출처 : <https://www.healthandsafetyatwork.com/regulation/changing-world-of-work>

2) Chair of non-executive director(2016. 4~)

○ 영국통계청에 따르면 90만명이 제로아워계약(zero-hour contract)\*으로 근로를 하고 있으며, 80~120만명이 인력센터3)를 통해 근로 중임

\* 제로아워계약(zero-hour contract) : 최소 노동시간에 대한 규정 없이 고용주가 원하는 시간에만 근무하는 고용형태로 숙박, 식품, 행정, 건강, 사회복지, 교통, 예술업 등에서 흔함

- 반면 GMB 조합4)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보다 더 많은 천만명 또는 1/3이상이 '각' 근로, 제로아워계약 또는 자영업 형태의 고용불안에 처해있음

- 최근 이런 변화로 인해 노동자는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고 책임소재는 불분명해지고 있음. 대부분 취약계층 노동자가 식료품제조, 소매업 등 영세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으며, 경제활동 구조가 여러 단계의 공급망을 통해 얽혀 있음

- 각경제 공급망의 최종 위치에 있는 사람을 실제 사업주로 칭할 수 있으며, 특별한 계약조건 없이 공급망 하부단계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음

- 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자영업자와 공급망내에서 일하는 노동자, 또는 Uber, Deliveroo를 통해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자에게 있어서 위험 유발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책임 경계도 모호해지고 있음

- 자영업 종사자 증가로 자영업과 노동자의 용어정의가 불명확해져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도 복잡해지고 있음

○ 자영업, 각 이코노미 종사자가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대부분 생활과 직결되는 경제활동을 하는 관계로 자율 규제 또는 위험 예방활동까지 요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

-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직무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지만 발생원인을 노동자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고 개인 스스로 환경에 적응해야한다는 인식이 높음. 하지만 최근 들어 위험을 유발하는 요인을 다양한 곳에서 찾아야 함을 인지하기 시작함

3) 원문표기 : Labour agencies

4) General, Municipal, Boilermakers and Allied Trade Union, 영국 산별노조급 노동조합(구글)

- 일부에서는 최근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근로감독, 안전보건 감독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통합 감독기관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그 예로 네덜란드 노동고용사회부(SZW)를 언급하기도 함 (McGrellis, NCRQ 교육국장)
- 영국의 경우 안전보건청, 지자체, 근로감독기관(Gangmasters and Labour Abuse Authority, Employment Agency Standards Inspectorate), 최저임금 관련 부서, 평등인권위원회(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 고용센터, 기타 자문기구 및 중재기관 등 기관이 함께 접근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음
- 하지만 성격과 문화가 다른 여러 기관을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 시 부작용도 발생할 수도 있으며(McGrellis, NCRQ 교육국장), 틱박스 문화(tick-box culture)를 유발하여 지나친 규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Peter Hall, 前IIRSM 회장)
  - \* 틱박스(tick-box) : 일명 체크박스로도 불리며 일련의 항목 중에서 다중 선택
- 前 영국안전보건청장<sup>5)</sup>인 Geoffrey Podger는 “사업장 감독과 안전보건컨설팅이 다르고 감독관과 안전보건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전문분야가 다르므로 한 사업장에 대해 토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 <시 사 점>

- ◇ 각 이코노미에 따른 근로형태 변화로 위험 발생원인과 책임소재가 모호해지고 있으며, 위험은 사업장 내외 환경 등 다양한 요인으로 기인
  - 최근 영국에서 이러한 현상을 인지하고 안전보건 감독기관의 역할을 재조명하여 사회적인 요인까지 고려한 감독 필요성 대두
- ◇ 우리나라 산업구조도 선진국의 변화 형태를 따라갈 것으로 예측되어
  - 안전보건 각 기관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사업장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최선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협업방안 등 모색 필요

5) Chief Executive

영국, 업무상 사고율은 하락하는 반면 업무상 질병율은 증가했으며, 이중 업무상 스트레스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노동자가 급증하는 추세<sup>6)</sup>

- 2017년 통계청(Office of National Statistics) 노동력조사(Labour Force Survey, LFS)에 따르면 업무상 스트레스<sup>7)</sup>가 근골격계질환을 제치고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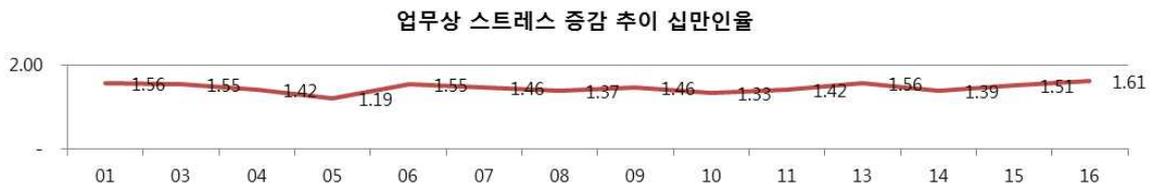
- 전체 업무상질병<sup>8)</sup> 발생은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며 과거 16년간 감소 추세를 유지
- 2001/02년<sup>9)</sup> 기준 업무상질병율은 4.87%였으며 지난 4년간 4%대 초반을 유지
- 2016/17년에는 3.97%로 감소(95% 신뢰구간<sup>10)</sup>)

- 영국 37,000가구를 대상 지난해 업무상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대답한 노동자는 526,000명(2016/17년)으로 3년 연속 상승

노동자 수(십만만인율)



- LFS의 업무상 스트레스 수치는 지난 16년간 매년 증감 추세를 유지  
- 2005/06년 최저치(1.19%), 2016/17년 최고치(1.61%) 기록



6) 출처 : <http://www.healthandsafetyatwork.com/stress/statistics-2017-work-illness-h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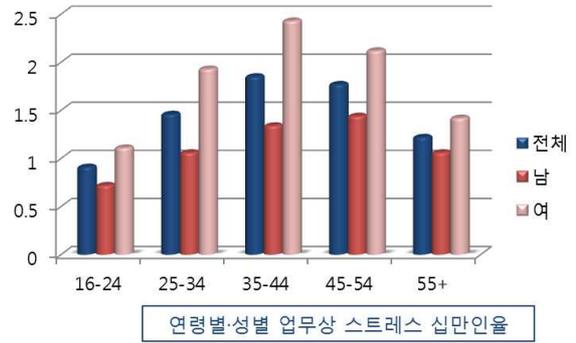
7) 원문표기 : Work related stress

8) 원문표기 : Work-related illness

9) Fiscal Year 2001/02 : FY01/02로 표기

10) 95% C.I.(Confidence Interv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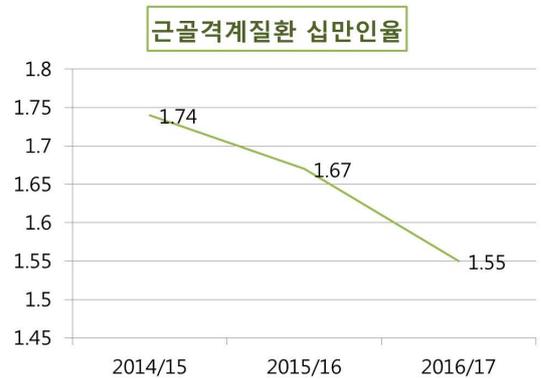
- 2016/17년 기준 업무상 스트레스(우울증, 불안 등)를 호소한 노동자 중 35세-44세가 가장 많음 (1.85/100명당)



- 스트레스, 우울증, 불안으로 인한 근로 손실일수도 7% 증가하여 1,170만 시간 (2015/16년)에서 1,250만(2016/17년)시간으로 늘어남 ※ 2014/15년 대비 25% 증가

- 업종별로는 의료 및 사회서비스업의 업무상질병율이 지난 4년 평균 4.5%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 농업, 임업, 수산업이 그 뒤를 이음 (건설 2.35%, 제조 2.62%)  
- 성별 조사 결과 여성(4.19%)이 남성(3.78%)보다 더 높음

- 업무 관련 근골격계질환을 겪은 노동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507,000명(1.55%)  
- 55세 이상(2.33%)이 가장 많음 (전체 평균 1.65%)  
- 여성(1.56%)보다 남성(1.74%)에게 많이 발생



- 반면 업무상사고율은 2001-02 이후 절반으로 대폭 감소 (2015/16년 609,000명, 1.97%)  
- 이중 7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라고 응답한 노동자는 175,000명



### <시 사 점>

- ◇ 스트레스는 과거 개인의 문제로 인식되었지만, 최근에는 직무관련 질환으로 인식
- ◇ 영국 업무상사고율은 감소하는 반면 업무상질병율은 상승, 업무상질병 중에서도 근골격계질환은 감소하는 반면 업무상 스트레스가 급증하는 추세  
- 우리나라도 고용형태가 변함에 따라 업무상 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 필요

영국 안전보건협회(IOSH), 건설현장에서 차량과 이동수단 운영의 효과적인 관리를 통해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시<sup>11)</sup>



## □ 내용

- 영국안전보건청(HSE)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건설현장 내 사고 발생원인 3위는 차량 관련 사고로, 전체 건설현장 중 67%가 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 경험
  - 2014년 21명의 건설현장 노동자가 이동하는 차량에 치여 사망
  - 자동차, 밴, 대형화물차, 굴삭기, 덤프트럭, 지게차와 같은 건설용 차량·기계와 이동수단 운영의 효과적인 관리를 통해 위험한 상황 대비
  - 모든 건설현장 사업주와 현장 관리자는 노동자, 방문객, 공공 안전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

## □ 관리 지시 사항

### ○ 보행자와 차량의 분리

- 차량 종류에 따라 이동 경로를 지정하고 차량과 보행자 전용 출입구 설치
- 보행자 보호를 위해 교차점에 조명 설치 및 신호 표시
- 현장 편의시설(화장실, 휴게실, 사무실)과 보행자가 많은 장소를 건설용 차량·기계 제외 구역으로 명확하게 지정

11) 출처 : <https://www.ioshmagazine.com/article/construction-traffic-management-risk-reduction>

○ 차량 운전 최소화

- 현장에서 차량 이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회전과 후진을 최소화
- 보행자와 운전자를 위해 장벽과 표지판을 설치하여 일방통행 및 회차로 체계를 구축하여 위험 예방

○ 현장 노동자 교육 및 정보 제공

- 현장에서 사용하는 작업용 차량 운전자에게 교육 훈련을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신규 운전자는 안전 직업능력평가 및 교육 제공
- 차량 이동을 지시하는 전문 신호수 선임<sup>12)</sup>
- 계획서를 수립해 차량에 접근을 제한 및 통제



○ 가시성 극대화

- 운전자 지원 : 거울과 CCTV, 후진 알람을 설치하여 사각지대와 어두운 공간에서의 위험 예방
- 조명 : 어둡고 흐린 날씨에 같은 경로를 공유하거나 교차지점에서 보행자와 운전자가 마주쳤을 때 서로를 인지
- 복장 : 보행자와 방문객은 반사 띠 등 눈에 띄는 보호구 착용

<시 사 점>

- ◇ 우리나라는 매년 70~8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건설기계 재해가 매우 높은 상황
  - 대부분의 사고가 기술적인 부분이 아닌 작업자 간 '신호'와 '소통' 등 단순한 문제로 인해 발생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작업자 간 의사소통 강화를 위해 전문 신호수 육성을 위한 제도 도입 필요<sup>13)</sup>

12) 그림 출처: <https://www.google.co.kr/url?sa=i&rt=j&q=&esrc=s&source=images&cd=&ved=0ahUKEwiG2cXQpvnYAhUETbwK1t9LA6MQJhwIBC&url>

1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671>

제331차 ILO 이사회 중 ILO-ISO(국제표준기구) 협정 이행 검토회의 결정사안 공유<sup>14)</sup>

## □ ILO와 ISO간 협력협정 종료 결정

## ○ 《ILO 이사회 결정 사항》

- 2013년 체결한 ILO-ISO 협정을 종료하고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ISO와 일체의 협력 중단
- ILO 사무국과 협의 후 종료 사유 등을 설명하는 공식문서 발간
  - ※ 안전보건분야 ILO와 ISO 역할, OSHMS 관련 ILO 입장 등의 명확화, 국제노동기준의 기능과 ILO 안전보건분야의 주요활동 설명 목적

## ○ 《결정 사유》

- ILO 노사정 구성원들은 ISO와의 협력관계 유지의 실익이 없고,
- 산업안전보건 경영시스템 ISO 45001의 신규 도입이 노동자 보호수준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 ISO 기준은 구속력이 없어 기준 준수를 보증할 수 없다고 판단함

## □ 각 그룹별 의견

## ○ 《노동자 그룹》

- ISO 45001 제정이 노동자 안전보건 보호수준 약화를 초래할 우려
- ILO와 ISO 기준 사이에는 상충되는 측면들이 있으므로, ILO는 협약 155호<sup>15)</sup>의 비준 촉진과 이행 독려를 위한 활동에 주력해야 함

## ○ 《사용자 그룹》

- ISO 활동이 ILO 역할과 중복 또는 상충되며 구속력도 없고, ISO가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데 전문성도 없으므로 산업안전보건분야의 협력자체가 무의미
- ISO 협력활동이 ILO 사무국 인력과 예산측면에 부담을 가져오는 반면, 실익 없음

14) 출처 : 주 제네바 유엔사무처 및 국제기구대한민국 대표부 문서(2017.11.27)

15) ILO Convention 155 :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Convention(1981 제정)

○ 《선진국 정부그룹 : 협정종료 지지》

- ISO가 국제노동기준을 참고하는 조건하에 제328차 이사회에서 협정연장을 동의했으나, 결과적으로 지난 4년간 협력의 결과물인 ISO 45001은 노동자 안전 보건 보호수준 저하로 귀결 될 것으로 예상됨에 강한 우려 표명
- 신규 제정 ISO 45001이 ILO 산업안전보건활동에 상충 또는 중복될 우려를 피하기 위해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동 협정의 목적은 달성되지 못했음

○ 《기타 각 참여그룹》

- 기타 협력종결 결정지지 : 중남미 정부 그룹, 아프리카 정부그룹, 스위스 정부
- ILO 사무국은 ISO 측과 산업안전보건분야에 시범적인 협력관계에서 어려움과 이견이 많았음을 보고

□ 향후 ILO-ISO 협력지속에 대한 ILO 입장

○ 《ILO 전제조건》

- ISO가 사회적 책임 표준화를 위한 ‘2005년도 ILO-ISO 양해각서’ 이행을 일방적으로 종료한데 대한 유감입장을 표명해야 함 (2018. 1. 3 까지)
- 위 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한 향후 사회적 책임관련 ISO 기술위원회 또는 ISO 26000<sup>16)</sup> 개정 등 추후 논의과정에 ILO는 참여하지 않을 것임

<시 사 점>

◇ 정부 안전보건당국의 감독활동과 자율적 안전보건경영시스템(OSHMS)으로 대별되는 현행체제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함

16) ISO 26000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 관한 국제표준

□ 덴마크의 위험성기반감독 사례 - 스마일리 시스템

스마일리 시스템(Smiley scheme)

- 사업장 방문점검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환경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색깔과 연동된 등급 부여<sup>17)</sup>
- 아이콘의 종류에 따라 위험성기반감독 대상 여부를 결정

○ 덴마크 작업환경청(Danish Work Environment Authority)은 2005년에서 2012년 사이 덴마크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안전보건환경 점검을 실시

○ 점검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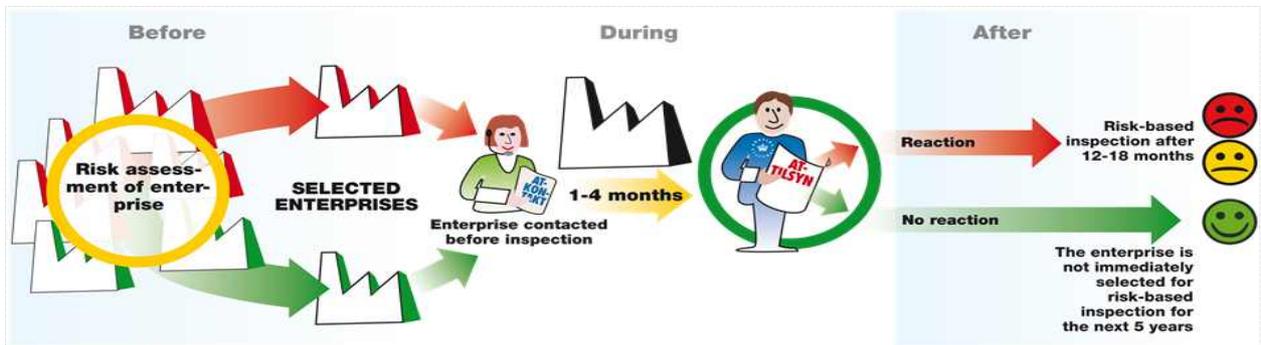
- 사업장은 자체적으로 위험성 평가 실시 후 작업환경청에 제출
- 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라 고위험 사업장과 저위험 사업장으로 분류
- 점검이 결정되면 사전에 점검 계획 사업장 통보
- 점검 후 결과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보건환경 점검결과 아이콘 공개

	규정 준수 우수사업장에 부여		규정 준수 우수사업장 중 '인증서' 요청 사업장에 부여
	즉시 개선 명령 조치 사업장*		규정 위반 사업장에 부여*

\* 6개월간 사업장 웹사이트에 공개

○ 점검 후속 조치 ⇨ 사업장에 안전보건문제 해결을 위한 확실한 장려책 제공

	점검 후 5년간 위험성기반감독 대상에서 면제
 	점검 후 12~18개월 이내에 위험성기반 감독 대상



[그림] 스마일리 시스템 진행 과정도<sup>18)</sup>

17) 안전보건공단 국제협력센터, 「국제 안전보건동향 제436호」, "선진 산업안전보건 현황 - 덴마크" p. 2

18) 그림 출처 : Felix Martine, ILOITC, Enforcement Function pp. 35-37

※ 본 자료 및 출처(URL포함)는 저작권 등의 문제로 인해 원본자료의 제공이 어려울 수 있으며, 웹사이트 기사를 주로 사용하므로 추후 웹사이트 링크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 국제산업안전보건동향은 이메일을 통한 정기 구독이 가능합니다. 신청 및 관련 사항은 국제협력센터 (052-7030-746)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청렴한 KOSHA가 안전한 일터를 만듭니다.**